

DDP 투어 운영규정(안)

제정 2017. 8. 23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디자인재단이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로부터 관리 위탁받은 DDP(동대문디자인플라자)(이하 “DDP”이라 한다)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DDP 투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휴관) DDP 투어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운영된다.

1. 매주 월요일(다만, 월요일이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제외한다)
2. 기타 대표이사가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
3. 천재지변으로 인한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

제3조(운영 및 관람 시간)

- ① DDP 투어의 운영요일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.
- ② DDP 투어의 운영시간은 10:00부터 19:00로 한다.
- ③ 원활한 투어 진행을 위해 마지막 투어 출발 시각은 17:30으로 한다.
- ④ 해설사의 스케줄에 따라 투어 참여 인원 및 시간이 변동될 수 있다.
- ⑤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운영 및 관람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

제4조(관람방법)

- ① 원활한 투어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투어 참여자는 해설사 1명당 최대 40명으로 제한한다.
- ② 투어 진행 시 배포되는 리시버의 파손 예방을 위해 단체 대표의 신분증을 보관한다.
- ③ 투어 할인대상 관람객은 1인 1장의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증빙하여야 한다.
- ④ 예약 투어를 우선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⑤ DDP 투어는 전시, 행사 관람은 포함하지 않는다.
- ⑥ 날씨와 행사에 따라 투어 코스가 변경될 수 있다.
- ⑦ 투어 진행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 1. 투어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
 2. 해설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행위
 3. 무단이탈하는 행위

제5조(현장투어)

- ① 현장투어라 함은 DDP의 방문자가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바로 투어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 회차별 참여 인원이 5인 미만일 경우 현장 투어는 취소된다.
- ③ 투어에 사용되는 장비 파손, 분실 시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6조(예약투어)

- ① 예약 투어라 함은 최소 7일 전에 이메일을 통해 최소 20명 이상 최대 120명 이하의 단체가 투어를 신청하여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 예약 투어 시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을 사전에 인솔자, 보호자 및 관

람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
- ③ 투어에 사용되는 장비 파손, 분실 시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'청소년' 예약투어는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 투어로 해당된다.
- ⑤ '일반' 예약투어는 만19세 이상 성인은 일반 투어로 해당된다.
-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 투어는 취소될 수 있다.
 - 1. 사전에 협의 없이 예약시간 20분 이상 지체하여 도착하는 경우
 - 2. 20명 이하의 인원이 방문한 경우

제7조(자유투어)

- ① 자유투어라 함은 DDP의 방문자가 해설사의 안내 없이 스스로 투어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 자유투어 참여자가 오디오 가이드를 대여하는 경우 신분증을 보관한다.
- ③ 오디오 가이드는 18:00 이전까지 투어 매표소로 반납하여야 한다.
- ④ 투어에 사용되는 장비 파손, 분실 시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8조(취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어를 취소할 수 있다.

- 1. 예약시간 20분 이상 지체하여 도착하는 경우
- 2. 고등학생 이하의 단체가 인솔자의 동행 없이 투어를 하는 경우
- 3. 예약 투어 신청 후 20명 이하의 인원이 방문한 경우
- 4. 현장 투어 참여 인원이 5인 미만인 경우

제9조(금지 및 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DDP 투어 이용을 금지 및 제한 할 수 있다.

- 1.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정신이 혼미한 자
- 2. 화재 등 위험물이나 악취,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
- 3. 해설사에게 욕설, 폭력 등의 위해를 가하는 자
- 4. 해설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거나 투어 운영에 차질을 일으키는 자
- 5. 20인당 1인의 인솔자를 동반하지 않은 고등학생 이하의 청소년 단체
- 6. 사전 협의 없이 투어 예약을 취소하는 자
- 7. 투어 물품을 파손하거나 분실하는 자
- 8. 고성 등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자
- 9. 문화재 보호 및 보안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
- 10. 그 밖에 시설물 보호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관리책임자가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

제10조(사설투어)

- ① DDP 투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DDP 내에서 사설 투어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투어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거나 DDP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투어를 중단할 수 있다.
- ③ 사전에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단체를 안내하는 경우 퇴관을 명할 수 있다.
- ④ 사전에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퇴관을 명할 수 있다.
 - 1. 스피커 마이크를 사용하여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

2. 조끼, 깃발 등 단체의 상징물을 사용하여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
3. DDP 투어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진행을 막는 행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